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 314 회 임 시 회

-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 -

제 안 설 명 서



2025. 9.

박 정 환 의원

제안 설명서

제안자: 박정환 의원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아동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아동보호 구역을 지정 및 운영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사회 안전망 강화와 아동 복지 증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 제3조와 제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습니다.
- 제5조에서는 아동보호구역의 지정, 공고 및 해제를 규정하였습니다.
-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정비·유지와 사업 추진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 제8조와 제9조에서는 시설물 설치 및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 제10조에서는 사업 협력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사전조치 사항으로는

-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2025년 9월 3일부터 2025년 9월 15일까지 달서구의회 홈페이지 등에 입법예고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아동을 각종 위험 및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달서구 실정에 맞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구체적 운영 기준을 담고 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

【박정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00925081
----------	----------

발의연월일: 2025. 9. 3.

발 의 자: 박정환 김정희 장호섭
이진환 남현주

1. 제안이유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아동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아동보호구역을 지정 및 운영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와 아동 복지 증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안 제1조~제2조)
- 나. 구청장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정(안 제3조~제4조)
- 다. 아동보호구역의 지정, 공고, 해제 절차 규정(안 제5조)
- 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사업추진 등의 사항 규정(안 제6조~제7조)
- 마. 시설물 설치 및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8조~제9조)
- 바. 사업 협력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안 제10조)

3. 제정조례안

4.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 「아동복지법」 제32조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

나.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비대상)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아동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을 마련함으로써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아동보호구역”이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범죄의 예방을 위한 순찰 및 아동지도 업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3. “영상정보처리기기”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2조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하여 아동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아동보호구역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다.

제5조(아동보호구역의 지정·공고·해제) ①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할 경우 영 제29조제3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 후 대구광역시 달서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관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해야 하며, 아동보호구역의 지정을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시설의 이전 또는 폐쇄로 지정 사유가 소멸되었을 경우 아동보호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제6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등) ① 구청장은 법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된 기기의 정비 및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대구광역시달서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사업추진 등)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아동 범죄예방을 위한 비상벨 설치

2. 아동보호구역 가시화를 위한 안내판 또는 조명 설치

3. 아동안전보호 인력의 배치 등에 관한 사항

4. 기타 아동의 안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시설물 설치 등)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대구광역시달서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를 준용하여 표지판 등의 설치를 추진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 보호를 위하여 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 관할 경찰서장, 대구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관련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지원 등)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를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 법령 】

□ 아동복지법

[시행 2025. 7. 19.] [법률 제19555호, 2023. 7. 18., 타법개정]

제32조(아동보호구역에서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등) ① 국가

와 지방자치단체는 유괴 등 범죄의 위협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의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범죄의 예방을 위한 순찰 및 아동지도 업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2. 10. 22., 2020. 4. 7.>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도시공원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26조의2에 따른 시간제보육서비스 지정기관
3. 「초·중등교육법」 제38조 따른 초등학교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특수학교
4.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② 제1항에 따른 아동보호구역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아동보호구역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2012. 10. 22., 2023. 3. 14.>

④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개정 2012. 10. 22., 2023. 3. 14.>

[제목개정 2012. 10. 22., 2023. 3. 14.]

□ 아동복지법 시행령

[시행 2025. 7. 19.] [대통령령 제35499호, 2025. 5. 7., 일부개정]

제29조(아동보호구역의 지정) ① 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공원의 관리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라 도시공원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자 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또는 법 제3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의 장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해당 도시공원 또는 시설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보호구역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3. 30.>

②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공원의 관리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원관리청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공원관리청”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아동보호구역 지정을 요청하거나 아동보호구역을 직접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3. 30.>

1. 공원관리청이 특별시장·광역시장인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아동보호구역의 지정 요청
2. 공원관리청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인 경우: 아동보호구역 직접 지정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또는 제2항에 따른 지정 요청을 받거나 직접 지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과 그 주변구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해야 한다. <개정 2021. 3. 30.>

1. 해당 시설 주변구역 내의 연간 아동범죄 발생 현황
2. 해당 시설을 통학하거나 이용하는 아동 수
3. 해당 시설의 주변구역이 범죄 발생 우려가 높은지 여부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 결과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

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한다. <개정 2021. 3. 30.>

1. 법 제32조제1항제1호의 도시공원: 도시공원의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500미터 이내의 일정 구역

2. 법 제3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 해당 시설 부지의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500미터 이내의 일정 구역

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사와 아동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해야 하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조사 및 아동보호구역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3. 30.>

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아동보호구역을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고해야 하며, 제1항에 따른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1. 3. 30.>

제30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관리 등)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29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아동보호구역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13. 1. 22., 2021. 3. 30., 2023. 9. 12.>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고장·노후화 등의 이유로 교체·수리하거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장소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3. 1. 22., 2021. 3. 30., 2023. 9. 12.>

③ 제29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아동보호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은 아동에 대한 범죄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해당 아동보호구역에 설치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화상정보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22., 2023. 9. 12.>

[제목개정 2013. 1. 22., 2023. 9. 12.]